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04
----------	------

제출년월일 : 2010. 2.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이유

가. 2007. 11. 1일 재의결 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소송 결과 대법원에서 무효로 확정·판결 됨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행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삭제(안 제11조)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 수정(안 제12조)
- 다. 부칙<2007-11-12 조례 제4101-1호> 삭제

□ 참고사항

- 가. 실·국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1부.
-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조례 제4101-1호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부터 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의결 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시의 의무 부담 및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면적 150,000m² 이상 또는 총 개발사업비 300억원 이상 개발사업의 협약, 대행, 위탁 등에 관한 사항</p> <p>2. 지방공기업법 등에 의해 시행되는 경영수익사업의 용지매각으로써 감정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수의 계약에 의해 매각하는 100억원 이상의 용지매각, 교환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p>	<p><삭 제></p>
<p>제12조(감사 및 조사) ① 영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행정사무감사(이하 이장에서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p> <p>② (생략)</p> <p>③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조사(이하 이 장에서 “조사”라 한다)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한다.</p> <p>④ (생략)</p>	<p>제12조(감사 및 조사) ① 영 제39조 제1항에 따라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 ----- ----- -----</p> <p>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부칙<2007-11-12 조례 제410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감정가격 이하의 토지매각 등의 등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사업은 매매된 가격과 감정평가금액의 차액에 대한 잉여금환수·활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기본협약 등이 체결되어 매각이 진행중인 토지공급을 위한 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매각하여야 한다.</p> <p>제3조(개발사업시행 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사업은 사업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미지정된 사업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단계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p>	<p><삭제></p>

관련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input type="checkbox"/> 「지방공기업법」 ○ 제40조 (중요자산의 취득·처분) <input type="checkbox"/>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41조 (중요자산의 취득·처분) <input type="checkbox"/>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 제7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 제9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제10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 제12조 (개발사업의 착수) ○ 제14조 (준공검사) ○ 제29조 (고시 등) <p style="text-align: center;">“별 첨”</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

제40조 (중요자산의 취득·처분) ①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1조 (중요자산의 취득·처분) ①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7호·제8호 및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처분하는 자산은 이를 제외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인 자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로,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1건당 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 (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②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득·처분결과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정비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4조제6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4조제5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고시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지연,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의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개발사업의 착수) 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 기한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 착수기한의 다음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제14조 (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각 호의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10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 (고시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운영목적에 비추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하 "퇴출업종등"이라 한다)을 고시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퇴출업종등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자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고시일 현재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이미 존재하는 퇴출업종등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